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72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다올투자증권㈜

2. 조치내용

□ **(금감원 원안)** 과징금 부과 81억 2,860만원

□ **(수정의결)** 공매도 위반 제재기준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호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(75%)하고, 위반 행위가 ETF LP 업무로서 발생한 점, 시장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추가 50% 감경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공매도 규제 위반

○ 다올투자증권㈜는 '21.5.13.~'22.8.2. 기간 중 ㈜BNK금융지주 등 395개 종목에 대한 534,349주(241억 7,948만원)의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면서 동 주문이 공매도임을 표시하지 않음

나. 근거법규
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80조 제1항,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